

의안번호	2209774
의 퇴 인	허성무의원
회 답 일	2025. 5. 7.
추 계 번호	25A2777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2 (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1)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, 시설복구비 지원,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(제1항) 천재지변, 화재, 산불, 홍수,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의2 (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재난과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영업결손에 대해 경제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, 관련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개정안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湓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경제적 지원, 시설복구비 지원,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개정안에 따른 재난 및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지원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,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에 한계가 있음
 - 향후 재난 및 대규모 재해에 대한 발생 횟수, 피해액, 종별·지역별 피해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29조2제3항에 따라 보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